

일본 제3섹터 활성화 정책 연구 출장결과 보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NPO 법 제정·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출 장 개 요]

■ 출 장 자: 복지서비스연구실 박세경 연구위원

■ 출 장 지: 일본 요코하마 및 도쿄시내

■ 출장기간: 2010. 11. 10 ~ 11. 15

■ 출장목적 및 주요 활동사항:

1. 출장목적

-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과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적 적용가능성 모색함.
- 친서민정책 주요과제인 “제3섹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정·운영, 민간자원 연계, 보라바이트 운영 사례 등을 고찰함.
- 정책추진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후속 정책 연구 수행에 필요한 협력관계 구축함.

2. 주요 활동사항

- 아리스센터: NPO 단체로서 지역활성화 사업,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신규 NPO 설립 지원사업, 사회공헌 NPO 지원 프로그램 수행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영리법인촉진법 제정 이후 활동 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공공-민간의 협력관계 실태 관련 심층 인터뷰 진행
- 카나가와 현민활동 서포트센터: 카나가와현의 자원봉사활동 종합지원시설로서 시설운영 현황 등을 파악
- 카나가와현 NPO 활동추진과: NPO 법인 설립인증, 자원봉사 활동 관련 시책의 종합적 기획조정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현황 및 향후 비영리부문과의 역할 분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
- (주)상카네트워크: 보라바이트 운영 실태 및 운영배경 등을 검토하고, 보라바이트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활동경험의 효과 관련 자료수집
- 모야이넷: 자립을 목표로 하는 생활곤궁자들의 재출발을 위한 자립생활 서포트 센터, 아파트 입주 지원사업, 생활상담 지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정부지원 현황 및 역할 수행의 애로사항 등 관련 자료수집

※ 첨부: 일본 제3섹터 활성화 정책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NPO법 제정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일 본 출 장 복 명 서

□ 출장목적 :

-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과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적 적용가능성 모색함.
- 친서민정책 주요과제인 “제3섹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정·운영, 민간자원 연계, 보라바이트 운영 사례 등을 고찰함.
- 정책추진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후속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협력관계 구축함.

□ 복명자 : 복지서비스연구실 박세경 연구위원

□ 출장기간 : 2010. 11. 10(수)~11.15(월)

□ 방문기관 :

- 아리스센터
- 카나가와 현민활동 서포트센터
- 카나가와현 NPO 협동추진과
- (주)상카네트워크
- 모야이넷
- 당초 예정된 일본 내각부 시민활동 촉진과 방문 및 간담회는 담당자 사정으로 출장당일 취소되었음.

□ 세부일정 :

- 2010. 11. 10(수) 한국/인천 출발 → 일본/나리타 도착
- 2010. 11. 11(목) 요코하마 이동, 카나가와현 NPO 협동추진과 방문, 스기노 과장 외 담당 공무원 6인과 정책간담회 진행, 카나가와 현민활동 서포트 센터 아카가와 소장 면담 및 센터 시찰
- 2010. 11. 12(금) 도쿄 이동, NPO 단체 아리스센터 방문, 후지이다 국장 면담, NPO 서포트센터 방문, 야마기시 이사장, 호세대 법학부 교수 면담
- 2010. 11. 13(토) (주) 상카네트워크, 보라바이트 창시자 아마모토 사장 면담 및 보라바이트 활동 현장 연계 시찰 및 활동자 면담
- 2010. 11. 15(월) 자립활동 지원 NPO 단체 모야이넷 방문, 오오제키 이사 외 지역사회 관계자 4인 면담, 일본/나리타 출발 → 한국/인천 도착

▶ 카나가와현 NPO 협동추진과 방문 결과

□ 면담자 : 스기노 과장 외 담당공무원 6인

□ 주요 논의내용 :

— 카나가와현 현민국 소속 NPO 협동추진과는 지역내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NPO 법인 인증 및 NPO 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스기노 과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NPO 촉진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음.

-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자원봉사 활동단체들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봉사활동에 대한 시각이 활성화 되었음.
- 이후 국민생활지원 종합심의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지원방안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하여 1998년 NPO 법이 제정되었음.
- 법 제정과정에서 1996년에는 카나가와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서포트하기 위한 카나가와 현민활동 서포트센터 설립하였으나, 양적 성과를 측정하거나 관련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규모를 확인할 수 없음.
- 한편, NPO 협동추진과는 ‘현민활동 서포트 센터’에서 카나가와 자원봉사활동 추진기금 21을 재원으로 NPO 인재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카나가와현 조례를 근거로 조성된 ‘자원봉사활동 추진기금21’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활동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10년 3월에는 NPO 단체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협정 체계의 구축 및 현과 NPO 단체 간의 상호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포로 구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NPO 단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정책 추진과정에서 NPO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NPO 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식이 높아져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 추진의 속도가 늦어지기도 함.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것임.

— NPO 등 비영리 단체의 활성화가 정부가 할 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 홈헬퍼 서비스, 독거노인 급식, 고령자 안부확인 등 현재 국가에서 하는 활동이 원래는 보란티아 활동에서 비롯된 것. 정부가 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하고 있다고 생각함.

-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NPO 단체들의 열악한 운영 여건이라 판단됨. 비영리 단체나 법인의 대부분이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일본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은 NPO 활동 촉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NPO활동촉진법에 의해 카나가와현에서 인정받은 ‘인정NPO’는 전체 NPO의 0.3%에 불과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의 실효성을 나타내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임.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부문화의 조성을 포함하는 나눔의식의 공유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사를 천명할 필요가 있겠음.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 및 관리 등 비영리 단체의 운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NPO 인재의 양성은 젊은이들에게 고임금의 일자리를 담보하지 않더라도 의미있는 생애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추진의 배경이 된 사회경제적 여건, 행정체계 변화, 자원봉사활동의 흐름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공론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카나가와현 현민활동 서포트센터 방문 결과

- 면담자 : 아카가와 소장 외 실무담당자 3인
- 주요 논의내용 :
 - 1996년 4월 설치된 카나가와 현민활동 서포트센터는 현내 자원봉사 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으며, 현의 자원봉사정책 수립의 실증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동 서포트센터는 26명의 지방공무원과 2명의 시간제 지원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무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단체들의 회의장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공동복사실, 공동우편함 등이 마련되어 있음. 특히 현내 자원봉사활동처와 봉사활동 수요처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함.
 - 센터의 정책기능 중 중요한 것은 현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자원봉사활동추진기금 21’의 집행 및 NPO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임(연간 30강좌를 진행).
 - 『자원봉사활동추진기금 21』: 가나가와 현 조례를 근거로 조성된 약 100억엔 규모의 기금은 매년 1억 천만엔 정도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과 NPO 단체가 함께 지역의 공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이 되고 있음.
 - 기존에는 자원봉사관련 NPO 단체들이 공공부문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공공재정 투입이 결정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형태였으나, 동 기금의 활용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기금사업의 주요 형태는 :
 - 1) 보건의료 및 어린이 육성 분야에 NPO 센터와의 협동사업 분담금으로 연간 1000만엔을 5

년간 지원해 주고 있음.

2) 유용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제안한 NPO 단체에 대해 200만엔의 보조금을 3년간 지원하고 있음.

3) 우수사업의 경우 해당 자원봉사단체에 100만엔, 개인 활동자에게는 50만엔을 표창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관련 단체, 그리고 NPO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운영의 열악성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지역단위의 기금을 확보하여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민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리스센터 방문 결과

□ 면담자 : 후지이다 국장 면담

□ 주요 논의내용 :

— 1988년 설립되고 1999년 NPO 법인 등록을 마친 아리스센터는 운영이사 8명, 상근간사 2명, 비상근 실무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내 NPO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NPO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시민사회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NPO 단체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은 ‘정보센터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지역사회의 NPO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활동내용의 공동 홍보, 법인운영의 전문적 노하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아리스센터의 후지이다 국장은 NPO법인 제정된 이후, 관련 단체의 활동범위가 변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즉, NPO 법의 제정으로 NPO 법인 설립이 간소화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신생 NPO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생겨났음. 특히 고령자 대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NPO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의 위탁사업을 하는 NPO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 NPO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의 관계가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발전하기 보다는 점차 종속관계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아리스센터 경우에도 운영예산의 정부 위탁금 비율이 70%에 달하는데, 이는 센터 운영에 연간 2000만~3000만엔 정도가 소요되며 1000만엔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임금지급 및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므로 지방정부의 위탁사업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아리스센터가 NPO 단체로서 공공부문에 대한 희망사항을 정리한다면 ;

• 50년만에 정권을 교체한 민주당의 키워드는 ‘새로운 공공: 공공-민간의 협력관계’임.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업무를 민간법인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후죽순으로 법인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립된 공공-민간의 주종관계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왜곡하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NPO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정부(공공부문)와 대등한 협력적 관계로 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공공부문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고유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정과 이들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민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형성되지 못할 경우, 민간부문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다원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을 것임.

▶ NPO 서포트센터 방문 결과

- 면담자 : 야마기시 이사장, 호세대 법학부 교수 외 실무담당자 4인
- 주요 논의내용 :
 - 운영이사 9명과 상근 간사 등 실무담당자 6명, 비상근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NPO 서포트센터는 1993년 설립되어 2000년에 NPO 법인으로 등록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은 NPO 활동추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 NPO 연계·상담 및 인큐베이팅 사업, 인재개발 및 인재육성사업, 각 지역 서포트센터, 비영리협동 단체의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NPO 활동추진을 위한 보급·계발 등임.
 - 정부 위탁사업, 자발적인 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부위탁 사업의 대부분은 직업훈련, 실업대책 등임. 대표적으로 문부과학성의 교육관련 정책 스텝을 길러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축적 등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1,500만엔의 사업비를 받아 고용지원 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NPO를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현재 60여 개의 NPO 중 40여 개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센터 이사장 야마기시씨는 최근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공익성이 약해져 공공부문, 기업, 시민이 함께 제3섹터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통해 행정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년여 전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공익법인 운영문제가 재검토 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공익법인의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NPO 법의 제정으로 NPO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고, 법 제정 이전에 NPO 단체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반발이 상당부분 유연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NPO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불건전한 기업이 있는 것처럼 부적절한 NPO도 생

기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일부 NPO 단체는 구정권과 결합하여 정부 위탁 사업을 수주하거나 후생성 기부금 또는 조성금을 받아 착복한다던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나, 이는 극히 일부의 소행임.

— 서포트센터의 주요 사업 중 NPO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NPO 관련 일자리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

- 후생노동성의 할로워크(HelloWork, 우리나라 워크넷과 유사한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취업교육 및 고용지원 관련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NPO단체에 취업을 할로워크에서 알선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3년 전만해도 NPO를 취업처로서의 인식조차 없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NPO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NPO 취업이 임금 수준은 높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수용되고 있음.
- NPO 단체의 평균 급여는 206만엔, 도쿄도에 위치한 NPO 단체의 경우에는 260만엔 정도이며, 일반 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지만 사회적 가치와 보람 때문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 NPO단체의 취업이 ‘팬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

- 임금수준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이 가장 문제이므로 안타까운 상황임.
- 일본에서는 최근 “새로운 공공: 공공-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고용창출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NPO 관련 일자리가 안정적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고용조건을 보장하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특히, NPO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간조직의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주) 상카네트워크 방문 결과

□ 면담자 : 야마모토 사장 외 실무 담당자 2인

□ 주요 논의내용 :

— 일본의 ‘보라바이트’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아르바이트(arbeit)의 합성어로 민간 네트워크 사업체인 (주)상카네트워크의 야마모토 사장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음. 야마모토 사장은 보라바이트의 창립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 1999년 설립되어 총 직원 8명이 보라바이트 운영 및 홈페이지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일본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 취업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동시에 청년들이 체력적정신적으로 허약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상태로라면 국력 손실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하였음.

- 이에, 청년들의 심신을 달련시킬 수 있는 업종으로 농업 부문의 취업을 착안하였으며,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연계하여 농촌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심신 발달과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보라바이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 보라바이트의 세부 운영

- 보라바이트에 등록된 주요 활동처는 홋카이도부터 큐슈에 걸쳐 위치한 농가로서, 도시지역의 청년일손을 구하더라도, 이들에게 3만~4만엔 이르는 교통비를 추가로 농가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보라바이트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교통비를 자기 부담하고 활동처로 이동하는데, 자기부담의 차원에서 보란티아(volunteer)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이는 매우 자발적인 참여과정임.
- 한편, 보라바이트 활동처에서 제공한 근로활동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청년들이 익숙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농촌 일손 이외에 복지분야, 캠프장, 스키강사, 어린이 관련 NPO 단체 등이 있지만 농촌 일손에 대부분의 활동처가 집중되어 있음.
- 2000년에서 2012년까지 누적적으로 보라바이트에 참여한 활동처는 11,529개소이며, '09년도 참여자 수는 5,000여 명 가량으로 매년 20%정도 증가되는 추세임.
- 보라바이트 활동기간은 정해지 않았으나 일주일 또는 1달 단위가 가장 많으며, (주)상카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활동처와 희망 청년을 연계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급여수준 및 일감에 대해서는 직접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보라바이트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활동처가 섭외·확인되면 보라바이트를 통해 활동 예정 농가에 직접 이력서를 전송하여, 이들 간의 협의를 통해 보라바이트 활동 여부가 확정됨.
- 보라바이트 활동처 제공자와 참여 희망자 간의 직접 협의과정에서 활동처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안전확인을 위해서 (주)상카네트워크는 모든 활동처에 대해 조사 과정(직원 2명이 전국을 돌며 보라바이트 활동처를 평가)을 거치고 있음. 사전에 제시한 근무조건과 상이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 보라바이트 활동처 중에서 청년 일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일손 1인당 1만엔의 수수료를 (주)상카네트워크에 지불해야 함.
- 현재 일본 농수산부에서 정부지원금 제공을 제안하였으나, 순수 민간사업의 의도가 희석될 것을 우려하여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NHK 등 대중매체에서도 보라바이트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심층보도 등을 방송하고 있음.

— 보라바이트의 운영 성과

- 한국의 청년들도 인터넷을 통해 보라바이트에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자의 대부분은 임금을 저축을 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매년 10명 정도의 보라바이트 참여자는 농촌지역에 잔류

하여 농업을 생업으로 이어가기도 하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함.

- 고령화된 농촌의 청년 일손 부족 상황과 청년의 농업부문 취업을 연계하는 보라바이트사업은 육체적 노동을 통해 노동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농업 관련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주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서 힘든 육체노동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자체의 순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임.

▶ NPO 단체 모야이넷 방문 결과

- 면담자 : 오오제키 이사 외 지역사회 관계자 3인

- 주요 논의내용 :

— 모야이넷의 설립 배경

- 지역사회 내의 노숙자 및 주거빈곤자의 입주지원사업, 생활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해온 모야이넷은 총 10여 명의 상근자와 5명의 비상근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음. 4000만엔의 기부금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현재 연간 6000~7000만엔의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기부금 자산임.
- 이나바시와(현 대표)와 유아사(현 내각부 소속)가 도쿄대 대학원 재학 중, 신주쿠, 시부야 등의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모야이넷의 설립계기가 되었음(94년부터 매주 800명에게 6년간 식사제공).
- 이들은 노숙자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쿄도와 나라현에 ‘3천엔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신주쿠와 타이토구 2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0명을 시범 지원하였음.
- 노숙자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신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모금된 기부금 800만엔을 채권화하여 2명의 대표자 명의로 보증을 제공하였음.
- 이어 2001년도에 모야이넷이라는 NPO 법인으로 등록하고, 2003년부터는 모야이넷의 명의로 노숙자 주택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주거가 확보된 노숙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예: 호적 정리, 범죄연루, 부채 문제 등)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공정무역 사업에 참여, 노숙자들이 커피콩을 볶아서 통신 판매하는 일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모야이넷의 활동 경험을 통해 NPO법에 근거한 ‘인증 NPO’와 ‘인정 NPO’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일본에는 총 4만여 개 정도의 NPO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80개 정도만 인정 NPO로 등록되어 있음.
- ‘인정 NP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년간 법인 운영 재정 구성 가운데 기부금의 비율이 20% 이상 되어야하고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NPO들은 국가나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많아, 기부금 비율을 20%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굳이 인

정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NPO법에 근거하여 ‘인정 NPO’에 기부금을 제공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복지부문의 대표적인 NPO 단체로서 일본 정부에 바라는 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 정부의 ‘새로운 공공’에 대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NPO 기관이 공공부문과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관리, 노무 관리 등의 전문적 책임성을 유지·성장 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임.

□ NPO를 비롯한 포괄적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공공의 책임회피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각각의 역할과 책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개요

— 소관부처 : 내각부

— 1998년 3월 25일 제정, 2008년 5월 2일 최종 개정

— 주요내용

- (목적) 민간 비영리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져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임의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어 이러한 단체가 간단하고 쉬운 수속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설립인증)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지사가 관할청이 되어 인증권과 감독권을 가짐.
- (법인 설립요건)
 - 1) 특정비영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3) 사원의 자격에 관해 부당한 조건이 없을 것
 - 4) 임원 중 보수를 받는이가 1/3 이하 일 것
 - 5) 종교활동,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6) 특정공직자(후보자), 정당을 추천·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7) 폭력단 혹은 그 구성원에서 벗어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단체
 - 8) 10명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 (활동분야) 특정비영리활동이란 시민에의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총 17개로 제한함.

※ 보건·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마을만들기(지역사회 건설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재해구호활동, 지역안전활동, 인권의 옹호 또는 평화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국제협력활동,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 추진을 도

모하는 활동,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정보화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과학 기술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경제활동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직업능력개발 또는 고용기회의 확대를 지원하는 활동,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활동, 앞의 각호가 내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원조 활동

- (그 외의 사업) 특정비영리 활동과 관련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수익을 일으켰을 때 특정비영리 활동과 관련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
- (정보공개) 법인 운영의 자주성을 존중하나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선택·감시를 위해 인증 신청시 관할청에서 열람 공고, 사업보고서 열람 공개 등 규정하고 있음.